

환경표지 인증기준

EL607

제정 2003년 1월 6일

개정 2021년 8월 24일



EL607 : 2021 수처리제





제 정 자: 환경부장관
제 정: 2003년 1월 6일 환경부고시 제2002-219호
최 종 개 정: 2021년 8월 24일 환경부고시 제2021-164호
원안 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
친환경생활처(전화 1577-7360)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el.keiti.re.kr>)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목차

머리말	0
1 적용 범위	1
2 인용 표준	1
3 용어와 정의	1
4 환경 관련 기준	1
4.1 유해영향 무기물질	2
4.2 유해영향 유기물질	2
4.3 소독제	2
4.4 심미적 영향물질	2
5 품질 관련 기준	3
6 소비자 정보	3
7 검증방법	3
8 시험방법	3
9 인증사유	4

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607**. 수처리제【**EL607-2002/2/2016-134**】는 개정되어 이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경표지 인증기준

EL607:2021

수처리제

Water Treatment Agents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수처리제의 환경표지 인증 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SPS-KWWA A 110, 수도용 약품 평가 시험방법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기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환경부고시

먹는물수질 공정시험 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과 KWWA A 110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4 환경 관련 기준

수처리제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수처리제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전과정 단계	환경성 항목	환경 개선 효과
원료취득	-	-
제조	-	-
유통·사용·소비	▪ 유해영향 무기물질	▪ 먹는물 안전성 확보
	▪ 유해영향 유기물질	▪ 먹는물 안전성 확보
	▪ 소독제	▪ 먹는물 안전성 확보
	▪ 심미적 영향물질	▪ 먹는물 안전성 확보
폐기	-	-
재활용	-	-

4.1 유해영향 무기물질

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먹는물에 부가되는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과 관련하여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기준

항목	기준 (mg/L)	항목	기준 (mg/L)
납(Pb)	0.001 이하	보론(B)	0.1 이하
비소(As)	0.001 이하	니켈(Ni)	0.001 이하
셀레늄(Se)	0.001 이하	안티모니(Sb)	0.000 2 이하
수은(Hg)	0.000 05 이하	몰리브덴(Mo)	0.007 이하
시안(CN)	0.001 이하	우라늄(U)	0.000 2 이하
6가 크로뮴(Cr ⁶⁺)	0.005 이하	바륨(Ba)	0.07 이하
질산성질소(NO ₃ -N) 및 아질산성질소(NO ₂ -N)	1.0 이하	은(Ag)	0.01 이하
카드뮴(Cd)	0.000 3 이하	-	-

4.2 유해영향 유기물질

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먹는물에 부가되는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과 관련하여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기준

항목	기준 (mg/L)
페놀류(phenols)	페놀로서 0.0005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0.0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0.001 이하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02 이하
벤젠(benzene)	0.001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02 이하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0 2 이하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0.000 4 이하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cis-1,2-dichloroethylene)	0.004 이하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0.000 6 이하
아크릴아미드 단량체(acrylamide monomer)	0.000 05 이하

4.3 소독제

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먹는물에 부가되는 소독제와 관련하여 표 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소독제 기준

항목	기준 (mg/L)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	0.6 이하
아염소산 이온(hypochlorite ion)	0.2 이하

4.4 심미적 영향물질

제품 사용으로 인하여 먹는물에 부가되는 심미적 영향물질과 관련하여 표 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5 심미적 영향물질 기준

항목	기준	항목	기준 (mg/L)
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 mg/L 이하	구리(Cu)	0.1 이하
맛(taste)과 냄새(odor)	없을 것	아연(Zn)	0.1 이하
색도(color)	0.5도 이하	철(Fe)	0.03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ABS)	0.02 mg/L 이하	망간(Mn)	0.005 이하

5 품질 관련 기준

-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또는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기준의 인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입한 수처리제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입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인증기간 동안의 수입신고 내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소비자 정보

6.1 인증사유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6.2 제품 사용 정보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와 제품의 적정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6과 같다.

표 6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검증방법
환경 관련 기준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품질 관련 기준	a)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따른 인증서
	b) 제출 서류 확인
소비자 정보	제출 서류 확인

8 시험방법

8.1 일반사항

-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c)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맺는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맺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2 환경 관련 기준

「먹는물수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험하되, 시험용 시료는 수처리제를 최대 첨가비율로 물에 희석한 것으로 한다. 다만, 「먹는물수질 공정시험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SPS-KWWA A 110에 따라 시험한다.

8.3 품질 관련 기준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또는 수처리제등(수처리제와 먹는샘물)의 자가기준과 자가기준의 인정기준에 따라 시험한다.

9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 ^a	에너지 절약 ^b	지구 환경오염 감소 ^c	지역 환경오염 감소 ^d	유해물질 감소 ^e	생활 환경오염 감소 ^f	소음·진동 감소 ^g
해당 여부					●		
^a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 ^b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c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 ^d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 잘 됨 등 ^e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 ^f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 ^g 저소음, 진동 감소							

[공통기준]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
8.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으로 검증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차례에 따른 표준의 시험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 가. 한국산업표준
 - 나.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 다. 국제표준
 -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 마. 기술원장이 인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